

수원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14723 판결 [매매대금 등 청구]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147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153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우

피고, 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주

변론 종결 2020. 11. 19.

판결 선고 2020. 12. 1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1532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43,830,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제1심판결 제3쪽의 표 부분 제9행의 "790,000,00원"을 "79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3행의 "365,0000,000원"을 "365,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28,670,00원"을 "28,670,000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재권

판사이상호

판사조효정